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75

발의연월일: 2020. 9. 21.

발 의 자:김병욱・김정호・이병훈

최인호 • 고용진 • 김민기

전용기 • 전혜숙 • 이상직

유동수 · 조응천 · 홍성국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에 대하여 출자·투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투자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다양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제지원의 대부분이 2020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벤처기업 등의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종료될 경우 이들을 위한 투자가 줄어 벤처기업들이 연구·기술개발 과정을 지속하기 어렵 게 될 우려가 있음.

이에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3 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혁신적인 산업환경 구 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 "2020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 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 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과세) ①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 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라 한다) 및 창업기획 자(이하 "창업기획자"라 한 다)가 「중소기업창업 지원 법」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 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 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 업전문회사(「중소기업기본 법 |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한다. 이하 "신기술창업 전문회사"라 한다)에 2020년 -----2023년 12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월 31일-----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이하 "신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한다)을 통하여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또는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취득한 주식 또는출자지분가.~마.(생략)

1	フ)	그으	과리	·운용하는	변이
4.		ㅁ글	ゼ니	'군중이는	답긴

2.	
	<u>2023년 12월 31일</u>
3.	
	<u>2023년</u>
	12월 31일
	가. ~ 마. (현행과 같음)
4.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 인등"이라 한다)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창투 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 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 지분
-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 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 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 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

	<u>2023년 12</u>
월 31일	
5	
	<u>202</u>
3년 12월 31일	
6	
<u>2023년 12월 31일</u>	

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
자지분				

- ②·③ (생 략)
- ④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또는 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⑤ (생략)

-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⑥ (생략)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u>2020년 12월 31일</u>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하다.
 - 8 제1항제1호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1항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

	②・③ (현행과 같음)
	4
	90001 I
	<u>2023년</u>
	12월 31일
	⑤ (현행과 같음)
제	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
	한 과세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2023년 12월 31일
	- <u>.</u>
	8

정은 <u>2020년 12월 31일</u>까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u>020년 12월 31일</u>까 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 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 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 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 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 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 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 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 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 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 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

<u>2023년 12월 31일</u>
<u>2023년 12월 31일</u>

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 ④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